경정청구 계약서

"위 임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수 임 자"

성 명: 세무법인 더조이 강남중앙지사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396, 강남빌딩702-1호

위 위임자 을 "갑"이라하고, 수임자 세무법인 더조이 강남중앙지사를 "을"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 다 음 -

제1조【업무】"갑"은 "을"을 대리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에 업무에 대하여 위임한다.

- 1) 2023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 2) 2023년 종합소득 개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제2조【보수】본계약에 따른 총보수는 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환급액의 30%(부가세별도)으로 한다.

제3조【의무】"갑"은 본 계약의무 수행에 필요한 증빙자료 및 제반서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을"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갑"이 제공한 자료에 의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회계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밀의 보장】"을"은 본 계약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갑"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4조【해약의 책임】1. "갑"의 사정에 의해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이후에 야기되는 세무처리에 대하여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을"의 사정에 의해 본 계약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을"은 그 시점까지의 모든 업무를 정리하고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업무를 종결시키기로 한다.

제5조【업무수행의 불능】1. "갑"이 제공한 자료의 불비 및 사실과 다른 자료의 제시 등의 사유로 본 계약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는 본 계약 불이행의 책임은 "갑"과 "을" 쌍방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6조【손해배상】본 계약과 관련하여 "을"의 고의 내지 과실로 과세관청으로부터 "갑"에게 부과된 세금의 가산세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제7조【손해배상금액 한도】"갑"이 제7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할 경우에 손해배상금액은 제2조의 보수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8조【기타】본 계약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소지한다.

2025 년 월 일

갑: 인

310-85-22418 세무법인 더 조아 장남중앙기차 미 서울시 선호구 선호대로 396 702-1호(선호등, 강남병명) 서비스 세무사